고용노동부

대전지방고용노동청

수신 관내 500인 이상 주식회사 대표이사
(경유)
제목 안전 · 보건계획 수립, 이사회 보고 · 승인에 대한 이행 안내 및 지도

1. 평소 산업재해 예방업무에 적극 협소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

2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으로, 「상법」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·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· 승인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3. 또한, 계획에는 ①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, ②관리조직 구성 · 인원 및 역할, ③예산 및 시설 현황, ④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, 이사회 보고 ·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.

4. 따라서, 우리청에서는 관내 상시근로자 500명이상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안전 ·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, 이사회 보고 · 승인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지도(점검)하고자 하오니, 아직까지 상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회사에서는 "안전 · 보건 계획 수립 가이드북(붙임1)"을 참고하여, 조속히 이사회 보고 · 승인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문의사항은 042-480-6305 또는 042-480-6319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※ (공문 및 붙임1, 2) 대전지방고용노동청(누리집)-정보공개- 부서별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

○ 안전 · 보건 계획 점검 계획
- 자체확인 및 이행: 2025. 3. 4. ~ 3. 17. / 2주간
- 행정사항: 공문 및 증빙자료(붙임2) 제출
 · (증빙)안전 · 보건 계획 수립(보고 · 승인)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, 대표이사 결재, 승인 입증 서류(계획 수립, 보고 및 승인일 기재)
- 제출기한: 2025. 3. 21.(기일 엄수)
- 제출방법: 전자팩스 팩스(0503-8803-0656)로 제출

붙임 1. 안전 · 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1부.
2. 제출양식 1부. 끝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



근로감독관	**김은혜**	팀장	**이강일**	과장	전결 2025. 3. 4. **이준행**

협조자

시행 산재예방지도과-1571 (2025.03.04) 접수

우 3523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90번길 34 (둔산동 1303 대전지방노동청) 4층 산재예방지도과 / http://www.moel.go.kr/daejeon/

전화번호 042-480-6319 팩스번호 042-480-6295 / keh0512@korea.kr / 비공개(7)